



IDNYC 신청자 서류 작성 요령



IDNYC 카드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원 증명 최소 3점 및 뉴욕 시내 거주지 증명 서류 최소 1점을 포함한 서류 점수 최소 4점.
2. 신청자가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 중 최소 1부에는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3. 서류 중 최소 1부는 생년월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4. IDNYC 카드 신청자의 연령은 최소 10세여야 합니다. 10-13세 신청자는 본인을 대신해 신청서에 서명할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 2페이지에 있는 보호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아래에서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 기관에서 인증한 원본 서류 및 사본만 인정되며, 원래 래미네이트로 코팅되어 발급된 문서에 한해 코팅된 상태로 수령합니다.

아래 목록의 서류로 IDNYC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표(*) 표시가 있는 서류는 생년월일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웹사이트 WWW.NYC.GOV/IDNYC를 방문하십시오.

신청서 작성서 지침은 IDNYC 신청서의 뒷면을 확인하십시오.

사(4) 점 해당 서류 - 신원 및 거주지 증명

- 현재 뉴욕시 주소가 있는 뉴욕주 운전면허국(DMV) 운전 면허증, 운전 연습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만료되지 않은 차량국 임시 면허증/허가증/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만료된 뉴욕주차량 운전 면허국 면허증/허가증/신분증도 인정됩니다.*
- 미국 국무부 정부의 운전 면허증 또는 현재 뉴욕시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 비운전자 신분증 카드*
- 현재 주소를 포함하는 IDNYC 카드*
- 현재 주소를 포함하는 뉴욕시 경찰청(NYPD) 발급 제한적 권총 면허증*
- 학교 등록 시 제출하고 뉴욕시 교육부(DOE)에서 확인한, 보호자가 서명한 IDNYC 중학교 학생증 신청서

계속... 이(2) 점 해당 서류 - 신원 증명

- 미국 개인 납세자 번호(ITIN) 배정 서신
- 미국 국방 복무 (U.S. Uniformed Services) 신분증*
- 뉴욕주 교육부 전문 신분증 카드
- 뉴욕시 여름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 SYEP) 확인 양식(거주지 증명)*
- 사진, 지문 및 생년월일이 포함된 미국 국토 보안부 발급 I-94 양식*
- 뉴욕주 운전면허국(DMV) 발급 임시 운전 면허증, 운전 연습 허가,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카드*
-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발급한 양식 I-797, I-797A, I-797B 또는 I-797D 의 승인 공지
- 뉴욕시 교육부(DOE) 학생증, 보호자 동반

삼(3) 점 해당 서류 - 신원 증명

- 미국 여권 또는 미국 여권 카드*
- 외국 여권(기계 인식 가능)*
- 미국 주 운전 면허증 또는 사진이 있는 운전 연습 허가 신분증*
- 미국 주 발급 신분증 카드*
- 미국 영주권 카드(그린 카드)*
- 미국 시민권/귀화 증서*
- 미국 상선 선원 카드(U.S. Merchant Mariner Credential)*
- 미국 주 정부 발급 운전 면허증 또는 현재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 비운전자 신분증 카드*
- 뉴욕주 교정 및 사회 감독부(NYS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 출소 범죄자 신분증 카드(발급일 1년 이내)*
- 뉴욕주 통합 법원 시스템 변호사 보안 통과 신분증 카드*
- 일반 액세스 카드(현역, 전역 또는 민방위 군인용)*
- 현재 미국 근로 허가증*
- 미국 부족 신분증*
- 사진이 있는 뉴욕주 전자 혜택 이체(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 카드/CBIC*
- 현재 자택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IDNYC 카드*

일(1) 점 해당 서류 - 신원 증명

- 외국 국가 신분증 카드(기계 인식 불가능)*
- 외국 출생 증명서*
- 사진이 있는 외국 군인 신분증 카드*
- 외국 운전 면허증(기계 인식 불가능)*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등 교육 기관 발급 신분증 카드*
- 뉴욕시 교육부 학생 확인서(거주지 증명) 학생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학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미국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동등한 프로그램, 또는 미국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장
-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미국 학교 성적 증명서
- 사진을 포함하지 않은 뉴욕주 EBT 카드*
- 뉴욕시 SYEP 신분증 카드
- 사진이 있는 미국 노조 신분증
- 성직자 신분증을 포함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직원, 컨설턴트 또는 이사회 신분증 카드
- 혼인, 합법적 동성 결혼, 동거인 또는 이혼 증명서*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메트로 카드(MetroCard)
- MTA Access-A-Ride 신분증 카드
- 뉴욕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NYC Parks and Recreation Center)에서 발급한 성인, 청소년, 노인 또는 재향군인 회원 카드
- 미국 유권자 등록 카드
- 미국 징병제 등록 카드*
- Medicare 카드
- 미국 개인 납세자 번호(ITIN) 카드
- 자녀의 미국 출생증명서(반드시 신청자를 부모로 명시)*
- 사진이 있는 뉴욕주 정신건강국 시설 신분증 카드.

이(2) 점 해당 서류 - 신원 증명

- 외국 여권(기계 인식 불가능)*
- 만료된 미국 여권 또는 여권 카드(만료일 최대 3년, 기계 인식 가능)*
- 만료된 외국 여권(만료일 최대 3년, 기계 인식 가능)*
- 영사 신분증 카드*
- 미국 재향군인회(VA)에서 발급한 미국 재향군인 신분증 카드
- 미국 재향군인회(VA)에서 발급한 미국 재향군인 건강 신분증 카드
- 미국 정부, 주정부 또는 지역 정부의 직원 신분증
- 미국 출생증명서*
- 미국 국무부 발급 비자*
- 외국 운전 면허증(기계 인식 가능)*
- 외국 국가 신분증 카드(기계 인식 가능)*
- 소셜 시큐리티 카드
- 만료된 IDNYC 카드 - 현재 주소의 유무에 관계없이(만료일 후 6개월 이상 그리고 3년 미만)

일(1) 점 해당 서류 - 거주지 증명

- 케이블, 전화 또는 공공 요금 또는 명세서(발급일 60일 이내)
- 현재 주거용 거주지의 임대 또는 전대 계약서
- 지역 재산세 명세서(발급일 1년 이내)
- 소유지 주택 융자금 납부 영수증(발급일 60일 이내)
- 은행 거래, 금융 또는 신용 카드 청구서, 명세서 또는 통지서(발급일 60일 이내) 반드시 계좌 및 고객 확인 번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급여 명세서(발급일 60일 이내)
- 명세서, 청구서 또는 의료기관의 기록(발급일 1년 이내). 반드시 계좌 및 환자 확인 번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뉴욕주 법원(뉴욕시 법원 포함) 또는 연방 법원에서 발행한 배심원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발행일 60일 이내)
- IRS 양식 W-2, 1099-MISC, 1095-A, 1095-B 및 1095-C(세금 보고서는 보고 양식에 명시된 해당 보고 년도 이후 4월 15일까지 유효함)
- 세금 신고 증거가 포함된 세금 환급 명세서(신고일 1년 이내 발급)
- IRS 또는 뉴욕주 세무 및 재무부(NYS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DTF) 발행 서신 또는 문서(발급일 1년 이내)
- 보험 청구서, 명세서 또는 기록(주택 소유주 보험, 생명보험, 임대인 보험, 자동차 보험 또는 의료보험, 발급일 60일 이내)
- NYCHA 발급 문서(발급일 60일 이내)
- NYCHA 임대차 부록 및 임대 공지(발급일 1년 이내)
- 미국 우정국(USPS) 주소 변경 확인서(발급일 60일 이내)
- 뉴욕시 주택 보존 및 개발(HPD) 섹션 8 임대료 상제 명세서(발급일 1년 이내)
-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HRA) 사례 구성 요약 보고서(발급일 60일 이내)
- 사진이 있는 뉴욕주 정신건강국 시설 입원 환자 신분증 카드.
- 보건 복지부(HHS)/난민 정착 담당실(ORR) 발급 “퇴원 확인서”(발급일 1년 이내)
-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감독 명령(발급일 1년 이내)
- 뉴욕주 운전면허국(DMV) 발급 임시 운전 면허증, 운전 연습 허가,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카드
- 뉴욕주 발달 장애국에(NYS OPWDD) 발급한 발달 장애 진단 또는 확인 통지서(Notice of Decision or Determination, NOD)(발급일 1년 이내)
- 국제연합(UN) 대사 및 가족들에 대한 거주지 확인 서신(발급일 60일 이내)
- Head Start, Early Learn 또는 뉴욕시 교육부 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부모/보호자 확인서(발급일 60일 이내). 신청자는 학생에 대한 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립 또는 교구의 학교에 등록된 학생 확인서(발급일 60일 이내). 신청자는 학생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뉴욕시 교육부 학생 확인서(교육청 학교에서 이용 가능). 학생은 학생증을 제시하거나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 SYEP 확인 양식
- 뉴욕시 노숙자 보호소 확인서(신청자가 최소 15일 동안 해당 보호소에서 거주했고 보호소에서 최소 30일 동안의 지속 거주를 허용한다는 내용 서술). (발급일 60일 이내)
-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대학교 주거 시설 계약서. 신청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학생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 주소로 우편을 수령한다는 대학교 행정 책임자의 서신. 신청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발급일 60일 이내) 카드 상의 주소는 ‘Care-of’ 학교로 표시됩니다.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 본인의 이름으로 된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신청자는 배우자 혹은 동거 파트너의 이름을 제시하고 (1) 혼인, 합법적 동성 결혼 혹은 동거 파트너 증명서, 또는 (2) 신청자 및 배우자 혹은 동거 파트너가 부모로 명시되어 있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자는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서술되고 배우자 혹은 동거 파트너가 서명한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일(1) 점 해당 서류 - 자택 주소가 없거나 가정 폭력 피해자인 신청자의 거주지 증명

- 개인 노숙자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뉴욕시의 비영리 기관 또는 종교 기관이 발행한 “보호 관리 서신”. 단체는 반드시 현재 뉴욕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신청자가 지난 60일 동안 해당 단체에서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우편으로 단체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발급일 14일 이내). 카드 상의 주소는 “Care-of” 단체로 표시됩니다.
- 개인 노숙자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시 시 기관, 비영리 기관 또는 종교 단체의 확인서(발급일 30일 이내). 신분증에는 주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계속... 일(1) 점 해당 서류 - 자택 주소가 없거나 가정 폭력 피해자인 신청자의 거주지 증명

- 뉴욕시 노숙자 보호소 확인서(신청자가 최소 15일 동안 해당 보호소에서 거주했고 보호소에서 최소 30일 동안의 지속 거주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서술)(발급일 60일 이내). 보호소 주소가 카드에 표시됩니다.
- 가정 폭력 거주형 관리 프로그램 확인서(발급일 30일 이내). 카드에는 주소가 전혀 표시되지 않거나 프로그램 사서함만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시 시 기관, 비영리 기관 또는 종교 단체의 확인서(발급일 30일 이내). 신분증에는 주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뉴욕시의 병원 혹은 건강 클리닉 발급 확인서(발급일 30일 이내). 신분증에는 주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 여전히 IDNY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태어났거나 현금 지원 또는 SCRIE 혜택을 받고, NYCHA 건물에 거주 및/또는 안정된 거주지가 없는 경우 등록 센터 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관계 - 보호자와 신청자와의 관계 증빙

- 신청자는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최소 2점에 해당하는 신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포함하여 최소 3점에 해당하는 신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 신청자 연령은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의 출생 증명서(21세 이하)*
 - 입양 판결, 입양 증명서 또는 뉴욕주 보건국의 입양 보고서(21세 이하)*
 -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NYC DOHMH) 및 뉴욕시 임시 장애 지원국(NYS OTDA)에서 발행한 친자 관계 인정서(21세 이하)*
 - 뉴욕시 아동 복지국(ACS) 또는 뉴욕시 아동 복지국(ACS) 위탁 보육 기관의 서신. 보호자는 반드시 ACS 또는 기관 직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거주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발급일 60일 이내)*
 - 보호자가 면허가 있는 위탁 부모라고 명시된 증명서, 보호자가 신청자의 위탁 부모라고 서술하는 위탁 기관의 확인서. (발급일 60일 이내, 21세 이하)*. 거주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 친권/친자관계 법원 명령(21세 이하)*
 -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 및 양부모의 혼인, 합법적 동거 혹은 동거 관계 증명서(21세 이하)*
 - 보건 복지부(HHS)/난민 정착 담당실(ORR) 발급 “퇴원 확인서”(21세 이하)*
 - 보호자를 신청자의 법적 보호인으로 지정하는 외국의 법원 명령(21세 이하)*
 - 보호자를 신청자의 법적 보호인, 관리인 또는 후견자로 지정하는 미국 법원 명령(모든 연령)*
 - NYS OPWDD 발급한 발달 장애 진단 또는 확인 통지서(NOD)(모든 연령)*
 - NYS OPWDD, NYS OMH, NYS DOH 또는 NYC DOHMH가 운영, 인종 또는 자금을 지원하는 거주인 보호 시설의 확인서. (발급일 60일 이내, 모든 연령) 보호자는 직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거주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 개인 보호자를 신청자의 대리 수령인으로 인정하는 SSA의 확인서(발급일 1년 이내, 모든 연령)*
 - 조직을 신청자의 대리 수령자로 인정하는 SSA의 확인서(발급일 1년 이내), 그리고 직원/대리인으로 인정되는 기관이 신청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서(발급일 60일 이내, 모든 연령) 보호자는 직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NYS OPWDD, NYS DOH, NYS OMH, NYC DOHMH 또는 해당 제공자 중 한 곳의 확인서(발급일 60일 이내, 모든 연령) 보호자는 직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향군인 신분 증명(하나만 필요합니다)

- DD 214: 현역 해제 또는 제대 증명서
- DD 2(퇴역): 미국 국방 복무 신분증 카드(퇴역)
- VIC/VHIC: 재향군인회 병원 신분증 카드
- NGB-22: 주 방위군과 제대 신고서 및 복무 신고서
- 뉴욕주 운전면허국에서 발급한 재향군인 지명 운전 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신분증
- 재향군인 지명 IDNYC 카드
- 군 복무를 확인하는 뉴욕시 재향군인 담당실의 증명서
- 군 복무를 확인하는 뉴욕시 재향군인 담당실 확인서